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복지정책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4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위기 상황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긴급복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단 기준 구체화(안 제3조제1,10,11,12호)
- 나.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문 정비 (안 제3조제8,10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제8호(정의)

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위기상황”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.

- 8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)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시행규칙 제1조의2(위기상황의 기준)

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

제1조의2(위기상황의 기준)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기간 : 2024. 2. 29. ~ 3. 20.

2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3) 신·구조문대비표 : [붙임1]

4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[붙임2]

5) 부패/인권/성별/아동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입원환자”를 “가구구성원의 입원”으로, “경우”를 “경우(간병·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동 복지협의체 사례분과 사례회의를 통하여”를 “동장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수도”를 “실직·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”로, “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”를 “인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”을 “실직·폐업 등의 사유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호 중 “월세”를 “실직·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1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<u>입원환자</u>, 치매노인, 알콜 중독자,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,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<u>경우</u></p> <p>2. ~ 7. (생 략)</p> <p>8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<u>동 복지협의체 사례분과 사례회의를 통하여</u> 추천한 경우</p> <p>9. (생 략)</p> <p>10. <u>수도,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</u> 생계가 어려운 경우</p>	<p>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가구구성원의 입원</u>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 <u>(간병·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)</u>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----- <u>동장이</u> ----- -----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실직·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</u>-- <u>인하여</u> ----- ----- --</p>

1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
12. 월세 등 주택(임시거주지 포함)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

13. ~ 17. (생략)

11. 실직·폐업 등의 사유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-----

-

12. 실직·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-----

13. ~ 17. (현행과 같음)

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장 김도영